##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2726

발의연월일: 2021. 9. 29.

발 의 자:김원이・홍성국・박상혁

최혜영 • 이동주 • 기동민

김성주・박홍근・유정주

우원식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폐업 시 2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고, 영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여 상속인이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이·미용업의 경우 면허를 소지한 상속인만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면허가 없는 상속인은 폐업신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이·미용사 면허가 없는 상속인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3조 제3항 신설 등). 법률 제 호

###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"을 "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"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신고를 한 자의 사망으로 제6조에 따른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상속인이 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을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.

제12조제1호 중 "제3조제3항에"를 "제3조제4항에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	제3조(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
폐업신고) ①・② (생 략)	폐업신고) ①·② (현행과 같
	유)
<u>&lt;신 설&gt;</u>	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업
	또는 미용업의 신고를 한 자의
	사망으로 제6조에 따른 면허를
	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상속인
	이 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상
	속을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
	에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폐
	업신고를 하여야 한다.
<u>③</u> · <u>④</u> (생 략)	<u>④</u> ・ <u>⑤</u> (현행 제3항 및 제4항
	과 같음)
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	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
<u>의한</u>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	<u>정에 따른</u>
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	
복지부령으로 정한다.	
제12조(청문) 보건복지부장관 또	제12조(청문)
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다음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	
한다.	
1. 제3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	1. <u>제3조제4항에</u>

의 직권 말소	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